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15 .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8. 12 . 29 .

다. 상정일자 : 1998. 12. 9. 제62회평창군의회(정기회)  
제2차 본회의

## 2. 제 안 이 유

- 종전 시도에 두도록 되어있는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를 개정된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시군단위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바,
- 우리군에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맑은물 공급은 물론 날로 증대 되어가는 각종 수돗물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수공급과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 요 내 용

가. 기 능

-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공표
-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

## 나. 구 성
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
-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
-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, 군의회의원, 소비자 및 그 보호단체, 환경단체, 여성단체,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

## 다. 위원의 임기와 직무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고, 위원회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,
-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

## 4. 검 토 의 견

-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
  -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·군에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
  -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.
- 본 평가위원회 설치시 감시기능과 자문기구로서 환경오염으로 위협받고 있는 수돗물공급에 대한 대주민 신뢰성 제고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.
-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